

#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정 2019년 06월 27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 21조 4항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장·감사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원 자격을 갖춘 위원장 1인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이 회의 임원이 될 수 없고, 회장,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 심의·확정
-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선거결과 및 당선자의 공고
-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제4조(선거에 관한 공고)**

- ① 위원장은 선거일 70일 이전에 선거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공고를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추천 접수기간은 20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유권자에게 선거 일정과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발송하여 홍보한다.

**제5조(회장 및 감사 후보 자격 및 확정)**

- ①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 ② 회장 및 감사 후보는 회원 5명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 ③ 회장 및 감사 후보로 추천된 자는 후보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 수락 의사와 함께 이력서와 소견서를 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후보자로 확정된다.

**제6조(선거 일정 및 방법)**

- ① 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 이전에 실시한다.
- ②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총회에서 시행한다.
- ③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한 유인물이나 기타 매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것을 금한다.

④ 본 조 ③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의 자격박탈이나 선거무효 결정을 협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건의는 위원1인 이상의 발의로 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 실행 일정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투표권)**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8조(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확정된다. 단,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또는 재선거 결정 후 즉시 투표결과를 공고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해산)** 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선거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안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